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8198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규선

변 론 종 결 2022. 3. 30.

판 결 선 고 2022.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2019. 11.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E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11. 11. 접수 제137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22.8%, 변제기 2021. 11.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9.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1.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20. 3. 26.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와 E은 2016. 12. 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었다. 2) 피고와 E은

2017. 9. 22. 이 사건 건물을 2억 5,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5.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7. 12. 15. 위 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현재도 채권최고액이 일부 감액된 상태로 존재한다).

3) 피고와 E은 2019. 12. 2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호협2690), 2020. 4. 20.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가 대출을 통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반면, E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당시에도 E은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③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와 E은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

별지